

## 2013년 금융회사 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 I. 개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이하 CGS, 원장 박경서)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주주총회 의안분석 및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
- 2013년 1월1일부터 6월28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53개 금융회사(지주·은행·증권·보험 등)에 대해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2012년 12월 개정)에 따라 의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II. 의안분석 결과 요약

- 금융회사들의 주주총회 소집공고일이 주총개최일의 평균 18.4일 전(상법상 기한은 14일전)으로 나타남
  - 이는 2012년의 17.6일에 비해 약간 나아진 수준이지만, 주주들이 심도 있는 의안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참고로 미국의 경우 통상 40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함)
- **53사 중 하나 이상의 안건에 반대를 권고한 회사의 비율은 67.9%(36사)**로서 2012년 79.3%(42사)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고, 안건 기준으로는 전체 440개 안건 중 88건(20.0%)에 반대해 2012년(20.5%)과 비슷한 수준임
  - 안건별 반대권고율(안건 수 기준)은 감사위원 선임(38.0%), 사외이사 선임(27.0%), 정관 변경(8.82%), 사내이사 선임(8.8%), 이사 보수한도(7.4%) 순임
- 임원 선임 안건의 경우, 회사 수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70.8%(전체 48개중 34개)에서 임원 후보 1인 이상에 대해 반대를 권고**해 2012년(76.6%)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전체 임원 반대 사유 중 독립성 훼손[이하에서 상세 설명]이 51.3%로서 가장 많고, 낮은 출석률(22.4%), 주주권의 침해(11.8%), 행정적·사법적 제재(7.9%)가 뒤를 이음

- 업권별로는, **은행의 88.9%와 증권회사의 81.0%**에서 하나 이상의 임원 선임 안전에 반대를 권고해 그 비율이 특히 높았고, 안전 수 기준으로는 은행·증권·보험을 제외한 여타 금융회사에 대해 임원 선임 안전의 38.9%에 반대를 권고해 금융사 평균을 크게 상회함(업권 구분은 별첨 1쪽 참조)

※ 금융지주회사는 주된 자회사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기타로 나누어 구분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23사)의 임원 선임 안전 반대권고율은 22.9%(건수 기준)로 대규모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19사) 대상의 반대권고율(27.3%)보다 다소 낮았으며, 두 그룹 소속의 금융회사 상당수(전자는 68.4%, 후자는 72.2%)에 대해 하나 이상의 임원 선임 안전에 반대 권고함

□ 안전 수 기준으로 2013년 금융회사의 **이사, 임원 선임 안전 반대권고율은 각각 20.6%, 26.8%**로서 2012년과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이는 사외이사·감사위원의 독립성, 추천절차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여전히 상당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줌

□ 사외이사 후보의 주요 반대 권고 사유는 회사의 주요거래법인 등의 특수관계인(직·간접 이해관계), 장기연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경영진과의 독립성 훼손**(전체 반대 사유의 52.9%)이었으며, 단일 사유로는 **과거의 불성실한 이사회 활동**(출석률 75% 미만)이 32.4%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회에 대한 반대 권고 사유도 사외이사과 유사하게 경영진과의 독립성 훼손(전체 반대 사유의 54.3%), 불성실한 이사회 활동(17.1%) 순으로 나타남

□ 앞서 확인한 대로 상당수의 금융회사에서 임원 후보 추천에 문제를 드러냈지만, CGS가 반대 권고한 모든 임원 선임 안전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됨

### Ⅲ. 시사점

□ 2013년 4월 자본시장법상 **새도우 보팅제도의 폐지**(2015년 1월1일 시행)와 맞물려, 결산월을 12월로 변경한 금융회사들은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전자투표 시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커짐

- 해당 금융회사는 2014년부터 1분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와 주주총회일이 겹쳐 주주들의 참석이 저조하면 의결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1/4) 충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새도우 보팅 제도: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 회사들이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는 데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폐해가 있었음

-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최대주주가 25%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
- 현재 전자투표는 특별한 정관 규정이 없더라도 의사결의에 의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하며, 예탁결제원은 이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행 경험이 있는 회사는 특수법인을 제외하면 차이나킹이 유일함

□ 모 금융지주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외국계 의안분석회사가 기관투자자들에게 제공한 분석내용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했는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의안분석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회사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함

-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관련 정보 공개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극히 소극적인 수준인데다 공개범위도 매우 협소함
-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음

□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위험이 자본시장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임원의 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원 자격·추천·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를 살려 조속히 입법·시행할 필요
- 사외이사에 대한 정례 평가, 후보 선임 안전의 개인별 안전 상정 의무화, 사외이사후보 추천 절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붙임) 의안분석 결과 세부 내용 1부. 끝.

※ 담당부서: Proxy Service 부문

담당자: 송민경 연구위원 (3775-3884, mksong@cgs.or.kr)

배윤정 연구원 (3775-3717, iam100gom@cgs.or.kr)

# (붙임) 의안분석 결과 세부 내용

## 1. 분석 대상 회사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금융회사 중 부동산금융회사, 저축은행을 제외한 53개사에 대해 주주총회 의안분석을 수행함
  - 은행(10개사), 증권(23개사), 보험(12개사), 기타(8개사)
- ※ 금융지주회사는 주된 자회사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기타로 나누어 구분함. 국내 자회사 중 규모로 주된 자회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외국계 지주회사는 기타로 분류함
- ※ '기타'는 카드, 캐피탈, 종합금융사, 금융지주회사, 기업투자·인수금융, 여신전문업

## 2. 주주총회 일정

- (현황 1) 결산월에 따라 53개 금융회사 중 16개사는 1분기에, 37개사는 2분기에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였으며, 지난 1분기와 비교할 때 고른 분포를 보임

<주주총회 개최 일정 분포 - 금융회사 53사>

구분	3월1주	3월2주	3월3주	3월4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6월3주	6월4주	계
개최 회사(개)	1	2	9	4	12	9	6	5	5	53
비율(%)	1.9	3.8	17	7.5	22.6	17	11.3	9.4	9.4	100

\* 12월 결산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3월 3주와 3월 4주에 정기주주총회의 50.2%와 28.5%가 개최 됨

- (현황 2) 2013년도 금융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평균적으로 개최일의 18.4일 전에 이루어졌으며, 전년도에 비해 0.8일 빨라짐
  - 업권별로는 보험 19.5일, 은행 18.1일, 증권 17.8일로서 증권회사가 가장 짧음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 기한이 기존에는 주총 개최일 5일 전까지였다가 금년부터 주총 개최 후 5일 이내로 변경되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일정 관련 부담이 다소 경감된 상황임

<주주총회 개최일과 소집공고일 사이 기간 현황 - 금융회사 53사>

구분(일)	~15	16	17	18	21	22	23	28~	계
공시 회사(개)	19	15	4	2	1	3	4	5	53
비율(%)	35.8	28.3	7.5	3.8	1.9	5.7	7.5	9.4	100

※ 상장회사는 최소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함(상법 제542조의 4). 미국에서는 간단한 공지(notice)와 홈페이지 자료 게시로 소집공고를 대신하려는 기업에 대해 해당 공지를 주주총회 개최 40일전까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Notice & Access Rule)

### 3. 의안상정 동향 및 주요 이슈

- 2012년에는 개정상법 시행(4월15일)에 따라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상장 금융회사가 51사(96.2%)로 매우 많았으나 올해는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기업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 주된 특징임
  -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금융회사는 31사(58.49%)이며, 이 중 반대를 권고한 회사는 3사(9.68%)임
  - 올해 금융회사는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허용 및 이사 책임 감경 조항을 정관변경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음
    - 이는 2012년의 논란으로 많은 금융회사가 이들 조항을 정관에 삽입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상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을 허용한 금융회사는 모두 4사인데, 이들 모두가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 것은 아님
  - 이 중 실제로 올해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 형식으로 공시한 회사는 1개사임
  - 나머지 3사는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승인을 구함
    - 정관은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허용할 뿐 의무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주의 승인을 별도로 구하는 데 특별한 정관상 문제는 없는 상황임

#### 4. 안전별 세부내용

- (반대 권고 안전) 2013년 반대 권고 안전은 감사위원 선임 35건, 사외이사 선임 34건, 사내이사 등 선임 5건, 이사 보수한도 4건 등 순으로 대부분 **임원 선임(74건)** 안전임
  - 정관변경 안전에 대한 반대 권고 건수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2012년 큰 논란을 야기했던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허용, 이사 등 책임 감경 허용 조항을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줄었기 때문임

< 안전별 반대 권고 건수 >

	감사위원 선임 <sup>1)</sup>	사외이사 선임 <sup>1)</sup>	사내이사 등 선임 <sup>1)</sup>	이사 보수한도	정관 변경	감사 선임 <sup>1)</sup>	기타 <sup>2)</sup>	전체
2013	35	34	5	4	3	2	5	88
2012	31	39	3	4	16	1	1	95

1)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전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 주식 액면 분할의 건, 자본감소,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 마련 등의 안전임

- (안전별 반대권고율 ①) 건수를 기준으로 반대권고율을 계산하면 **감사위원 선임(38.0%), 사외이사 선임(27.0%), 정관 변경(8.82%), 사내이사 선임(8.8%), 이사 보수한도(7.41%)** 순으로 나타남
  - 2012년과 비교하면, 정관 변경과 사외이사 선임 안전 반대권고율이 감소한 반면, 감사위원과 사내이사 선임 안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다소 상승함

< 안전별 반대율 ① 건수 기준 >

(%)

	감사위원 선임 <sup>1)</sup>	사외이사 선임 <sup>1)</sup>	사내이사 등 선임 <sup>1)</sup>	이사 보수한도	정관 변경	감사 선임 <sup>1)</sup>	기타 <sup>2)</sup>	전체
2013 건수 기준	38.0	27.0	8.77	7.5	8.82	66.7	44.4	25.0
2012 건수 기준	33.3	31.0	4.6	7.4	30.0	100	8.3	20.5

1)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전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2) 9개사에서 상정한 12건의 안전 중 반대권고안의 수를 계산함

- (안전별 반대권고율 ②) 회사 수 기준으로는 **감사위원 선임(67.6%), 사외이사 선임(54.8%), 사내이사 선임(13.9%), 정관 변경(9.7%)** 순으로 반대권고율이 높음
  - 2012년과 비교한 결과,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 변경과 사외이사 선임 안전에 대해 반대권고율이 감소한 반면, 감사위원과 사내이사 선임 안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다소 상승함

< 안전별 반대율 ② 회사 수 기준 > (%)

	감사위원 선임 <sup>1)</sup>	사외이사 선임 <sup>1)</sup>	사내이사 등 선임 <sup>1)</sup>	이사 보수한도	정관 변경	감사 선임 <sup>1)</sup>	기타 <sup>2)</sup>	전체
2013 회사수 기준	67.6	54.8	13.9	7.7	9.7	66.7	44.4	67.9
2012 회사수 기준	53.7	64.4	8.1	7.7	31.4	100	8.3	79.3

- 1)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전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 2) 9개사에서 상정한 12건의 안전 중 반대권고안의 수를 계산함

- (이사, 임원 반대권고율 집계) **전체 이사 후보의 20.6%**(189명 중 39명), 이사와 감사(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 후보의 26.8%**(284명 중 76명)에 반대 권고함
  - **임원 선임 안전 상정 회사의 70.8%**(48사 중 34사)에서 최소한 임원 후보 1인 이상에 반대함
  - 2012년과 비교하면, 이사·임원 선임 안전 중 1건이라도 반대 권고한 금융회사가 다소 줄었을 뿐 건수 기준으로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임원 선임 안전별 세부 반대율 > (%)

	사내이사 <sup>1)</sup>	사외이사	이사 선임(소계)	임원 전체 <sup>2)</sup>
2013 회사 수 기준	13.9	54.8	55.3	70.8
2012 회사 수 기준	8.1	64.4	67.4	76.6
2013 건수 기준	8.77	27.0	20.6	26.8
2012 건수 기준	4.6	31.0	22.0	26.0

- 1)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
- 2) 임원은 이사, 감사위원, 감사를 모두 포함
- 3)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전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 (임원 선임 반대사유)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의 주요 반대 사유는 장기연임, 회사와 직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전 임직원 등으로 **경영진과 독립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직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와 중요한 거래·협력 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주총 개최 회사의 경영진을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감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큼
  - 독립성 훼손 사유(직간접 이해관계, 장기연임,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로 인한 반대건수가 전체 반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 모두 1/2을 상회함
    - 전체 임원의 경우 51.3% (76건 중 39건)
    - 사외이사의 경우 52.9% (34건 중 18건)
    - 감사위원의 경우 54.3% (35건 중 19건)
  - ‘과거의 불성실한 이사회 활동’(출석률 75% 미만)은 사외이사에 대한 단일 반대 사유로는 가장 빈도수가 높았음

<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별 반대 건수 >

	직간접 이해관계가 있는자	낮은 출석률	장기연임	주주권의 침해	행정적 사법적 제재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감사관련 문제이력	과도한 겸임	계
감사위원	11	6	6	4	2	2	3	1	35
(비율)	(31.4)	(17.1)	(17.1)	(11.4)	(5.7)	(5.7)	(8.6)	(2.9)	(100)
사외이사	9	11	6	3	1	3		1	34
(비율)	(26.5)	(32.4)	(17.6)	(8.8)	(2.9)	(8.8)		(2.9)	(100)
사내이사				2	3				5
(비율)				(40.0)	(60.0)				100)
감사			2						2
(비율)			(100.0)						(100)
계	20	17	14	9	6	5	3	2	76
(비율)	(26.3)	(22.4)	(18.4)	(11.8)	(7.9)	(6.6)	(3.9)	(2.6)	(100)

1)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2) 개별 후보별로 반대 사유가 여러 건인 경우도 중복을 허용하여 계산함

□ (비금융회사와 비교) 임원 선임 안건에서는 KOSPI200 편입 비금융회사(182사)가 금융회사보다 **부적격 임원 후보를 추천**한 사례의 비율이 큼

○ 이는 2012년에 비해 2013년 금융회사의 부적격 임원 후보 추천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같은 기간 비금융회사의 부적격 임원 후보 추천 비율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결과임

※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모범규준을 반영한 ‘장기연임’ 기준을 제외하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지침을 적용함

< 금융회사와 KOSPI200 비금융회사의 임원선임 안건별 반대율 > (%)

	사내이사		사외이사		이사 전체(소계)		감사위원		감사		임원 전체 <sup>1)</sup>		
	I <sup>2)</sup>	II <sup>2)</sup>	I	II	I	II	I	II	I	II	I	II	I-II(%p)
2013 회사 수 기준	13.9	24.6	54.8	66.1	55.3	55.2	67.6	58.2	66.7	52.0	70.8	60.5	10.3
2012 회사 수 기준	8.1	7.0	64.4	52.0	67.4	43.8	53.7	46.4	100 <sup>4)</sup>	52.2	76.6	49.7	26.9
2013 건수 기준	8.8	4.0	27.0	41.3	20.6	22.7	38.0	42.7	66.7	44.8	26.8	28.0	-1.2
2012 건수 기준	4.6	3.2	31.0	33.2	22.0	16.2	33.3	32.0	100 <sup>4)</sup>	48.1	26.0	20.6	5.4

1) 임원은 이사, 감사위원, 감사를 모두 포함

2) I 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금융회사(지주·은행·증권·보험) 53사, II는 KOSPI200 소속 비금융회사 182사임

3)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4) 100% 반대율은 1사에서 상정한 1인의 후보에 반대한 결과임

\* KOSPI200 사는 “2013년 3월 KOSPI200사 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4.6) 참조

- (업권별 분석) 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한 은행의 88.9%, 증권사의 81.8%에 대해 최소 1인 이상의 임원 후보에 반대 권고를 함
  - 안건별로 계산하였을 때는 기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 가장 높은 반대권고율(38.9%)을 보임

< 업권별 임원선임 안건별 반대율 > (%)

업권구분	구분	사내이사	사외이사	이사 소계	감사위원	감사	임원 전체
은행(10)	회사수 기준	0.0	88.9	88.9	77.8		88.9
	건수 기준	0.0	25.5	22.2	30.0		25.0
증권(23)	회사수 기준	11.8	55.0	59.1	75.0	66.7	81.0
	건수 기준	6.5	28.8	20.2	42.5	66.7	28.3
보험(12)	회사수 기준	18.2	27.3	33.3	55.6		58.3
	건수 기준	12.5	18.2	15.4	37.5		21.8
기타(8)*	회사수 기준	25.0	50.0	25.0	33.3		20.0
	건수 기준	20.0	60.0	33.3	50.0		38.9

\* 카드사, 캐피탈, 종합금융사, 금융지주회사, 기업투자·인수금융, 여신전문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별 분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그룹 I)의 임원 선임 안전 반대권고율은 22.9%로서 대규모 금융 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그룹 II)의 동일 안전 반대권고율(27.3%)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규모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금융회사 중 대규모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회사만 선별하여 그룹으로 묶고 이들 두 그룹의 비교를 수행함

○ 회사 수 기준으로는, 그룹 I에 속한 금융회사 중 68.4%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임원 선임 안전에 반대 권고한 반면, 그룹 II에 속한 금융회사 중에서는 72.2%의 회사에서 임원 선임 안전에 반대 권고가 있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회사 기준으로 반대 권고가 약간 낮은 편이지만, 두 그룹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세부 반대권고율(안전 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이사 선임 안전: 그룹 I (14.7%) < 그룹 II(24.4%)

- 감사위원 선임 안전: 그룹 I (37.8%) > 그룹 II(32.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별, 임원선임 안전 반대율 > (%)

	사내이사		사외이사		이사 소계		감사위원		감사		임원 전체	
	I 2)	II 3)	I	II	I	II	I	II	I	II	I	II
회사수 기준	6.7	10.0	41.2	70.6	42.1	70.6	62.5	68.8	-	-	68.4	72.2
건수 기준	4.3	8.3	20.9	28.4	14.7	24.4	37.8	32.6	-	-	22.9	27.3

1) 임원은 이사, 감사위원, 감사를 모두 포함

2) I 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23사.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들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되었고 최대주주가 기업집단 최대주주와 일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룹 I에 포함시켜 계산함

3) II는 대규모(그룹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금융 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 19사

4)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전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 5. 정기주주총회 결과

- 2013년 6월28일(15:00)까지 53사 중 51사가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였으며, 공시한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가결됨
- 다만,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우 상정된 후보 1인이 주주총회일 현재 사망함으로 인하여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철회하고 나머지 이사후보는 원안대로 승인함
- \* 금호종금, 동양증권은 아직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지 않음